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62호

붙임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662호

##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000원 요금제”란 도선 이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선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지원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도서관 1,000원 도서관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기간 :

○ 대상선박

선박명	총톤수	항로명	승선자수	
			섬주민	일반인

○ 청구내용

청구금액(원)	예금주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붙임 : 도서관 1,000원 도서관 운임지원금 내역서

「여수시 도서관 도서관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1,000원 도서관 운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선사명 :

대표자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 2호서식]

## 도서관 1,000원 도서관 운임지원금 내역서

(단위 : 원)

노 선	구 간	이용자 구 분	이용 횟수	지원 단가	지원금액	비 고 (도서관요금)
합 계						

「여수시 도서관 도서관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관 이용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도서관명 :

대표자 :

주소 :

여수시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1,000원 요금제”란 도선 이 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요금 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운임지원) ① (생 략)</p> <p><u>② 제1항에 따른 도선 운임 지 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해당 도선 운임의 6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③ ~ ⑤ (생 략)</p>	<p>제3조(운임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 따른 도선 운임 지 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 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선운 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지원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